

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2025. 5.

가 상 자 산 위 원 회

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(안)

1 배경 및 경과

- 「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」(2.13.)에 따라 '25.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목적 거래가 허용될 예정
- 비영리법인 TF*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기준과 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 역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(안) 마련
- * 금융당국, 비영리법인(굿네이버스, 서울대발전재단 등), 회계기준원, 은행·가상자산업계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

2 가이드라인(안) 주요내용

- 비영리법인 요건
- 비영리법인별로 자산규모 및 기부 모금액 등의 편차가 커, 적절한 내부통제 수단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 설정

〈 가상자산 기부대상 비영리법인 〉

- ❶ 출연재산보고서 제출, 결산서류 공시,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등을 해야 하는 「법인세법」상 **특례·일반기부금단체***에 해당할 것
* 특례기부금단체 : 국가, 지자체, 사립학교,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모금기관 등
일반기부금단체 : 사회복지법인, 의료법인,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
- ❷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**외부감사 대상***으로서 **최근 3년간 감사의견 “적정”일 것**
* 외부감사 대상 : 직전년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
- ❸ **최근 3년간 「국세기본법」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*에 해당하지 않을 것**
*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: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·미보관, 거짓영수증 발급, 상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의무 위반 등으로 국세청이 공개하는 기부금수령단체
- ❹ 설립일로부터 **“5년 이상” 경과하였을 것**

□ 비영리법인 내부통제기준

- 비영리법인 TF에서 마련한 ‘가상자산 기부금 접수·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’를 참고하여 비영리법인이 자체 기준 마련 필요

〈 가상자산 기부금 접수·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 주요내용 〉

① (기부접수) 기부자 신원, 기부목적, 기부대상 가상자산* 등 확인

* 기부대상 가상자산 :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공동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
(‘DAXA 홈페이지-자율규제통합정보-회원사거래지원현황’을 통해 확인 가능)

② (기부심의) 가상자산, 회계,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기구*를 설치·운영하여 가상자산 기부의 적정성,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심의

* 기존 심의기구에 가상자산 등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

③ (기부수령) 가상자산 거래 전용계좌 개설 및 실명계정 연결 후 기부자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 기부수령*

*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무기명 기부 및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지갑 간 이전 제한

④ (현금화) 가상자산 수령 후 지체없이 처분(사전심의기구 결정에 따라 처분 시기 별도 설정 가능)

⑤ (세무·회계처리) ‘금전 외 자산’의 기부로 세무처리하고,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

□ 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

○ 은행의 역할

-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연결 신청 시점에 비영리법인 요건 충족여부 및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 심사
- 실명계정 연결 재심사 시점(예: 매 1년)에 비영리법인 요건,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 및 가상자산 현금화 자금 출금내역 점검

○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

-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시점에 가상자산 기부 상세내역 및 현금화내역 일치여부 등 점검

○ 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사항

- 비영리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자료 제출 거부 시 실명계정 연결 거부, 실명계정을 통한 입출금 제한 등 조치 가능

3 향후계획(안)

- 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 전산개발을 거쳐 6월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목적 거래 지원 예정.